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 5. 21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법령입안 심사기준 입법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미비점 및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”를 신설함. (안 제2조)
- 나. “제1항, 제2항, 제3항”을 각각 “제1호, 제2호, 제3호”로 함. (안 제2조)
- 다. “경험이 풍부한 자 등”을 “경험이 풍부한 자”로 함. (안 제5조제5항제2호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본문에 “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”를 신설한다.

안 제2조 “제1항, 제2항, 제3항”을 각각 “제1호, 제2호, 제3호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5항제2호 중 “경험이 풍부한 자 등”을 “경험이 풍부한 자”로 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b>제2조(정의) &lt;신설&gt;</b> <p>①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기초·문자해독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 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</p> <p>② “평생학습센터”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·정책개발·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③ “평생교육사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.</p>	<b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b> <p>1.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.</p> <p>2.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.</p> <p>3.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.</p>
<b>제5조(구성 및 위원)</b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외 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위촉직 위원 : 평생교육 전문가, 평생 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,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</p> <p>⑥ ~ ⑨ (생략)</p>	<b>제5조(구성 및 위원)</b> <p>① ~ ④ (원안과 같음)</p> <p>⑤ _____</p> <p>_____.</p> <p>1. (원안과 같음)</p> <p>2. _____</p> <p>_____.</p> <p>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⑥ ~ ⑨ (원안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,
- 나. 평생교육협의회 추진 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제명 “평생학습진흥 조례”를 “평생교육 진흥 조례”로 변경.
- 나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의 “평생교육법 제9조”를 “제5조”로, 제2조 제3항의 “평생교육법 제18조”를 “제25조”로 변경.
- 다. 평생교육을 “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기초·문자 해독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의의 이해를 돋고자 함.
- 라. 상위법 개정에 따라 “평생학습협의회”的 명칭을 “평생교육협의회”로 하고, 구성인원을 현행 “15인 이내”에서 “12인 이내”로, 위원장을 “부구청장”에서 “구청장”으로 변경.
- 마. 평생학습협의회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.
  - 1) 당연직 위원 :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학무국장
  - 2) 위촉직 위원 : 평생교육 전문가,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,

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
바. 현행 “평생학습”을 “평생교육”으로 변경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과  
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평생교육관련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써 평  
생교육을 사용하고자 함.

### **3. 개정근거 : 평생교육법**

### **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**

### **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**

### **6. 기타사항**

- 가. 입법예고(2009. 4. 2 ~ 4. 21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 · 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09. 4. 30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라. 신 · 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, “평생학습”을 “평생교육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기초교육·문자해독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② “평생학습센터”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·정책개발·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③ “평생교육사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및 본문 중 “평생학습”을 각각 “평생교육”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평생학습협의회”를 “평생교육협의회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평생학습”을 “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”으로, “마포구평생학습협의회”를 “마포구평생교육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

호부터 제3호까지의 “평생학습”을 각각 “평생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5인”을 “12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구청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

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학무국장

2. 위촉직 위원 : 평생교육 전문가,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,  
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

같은 조 제6항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잔여임기로”를 “남은 기간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평생학습”을 “평생교육”으로, “평생학습실무협의회”를 “평생교육실무협의회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구민의 평생학습”을 “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“평생학습”을 “평생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‘평생학습’을 ‘평생교육’으로, “학습참여자”를 “교육참여자”로 하며, “평생학습단체”를 “평생교육단체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평생학습”을 “평생교육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</u>
<b>제1장 총 칙</b>	<b>제1장 총 칙</b>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① “평생학습”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.</p> <p>② “평생학습센터”라 함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·정책개발·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③ “평생교육사”라 함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①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육, 성인기초·문자해독교육, 직업능 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 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</p> <p>② “평생학습센터”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·정책개발·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③ “평생교육사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조(평생학습의 진흥)</b>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</p>	<p><b>제3조(평생교육의 진흥)</b>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</p>
<h2>제2장 평생학습협의회</h2> <p><b>제4조(설치 및 기능)</b> ①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평생학습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·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기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</li> </ol>	<h2>제2장 평생교육협의회</h2> <p><b>제4조(설치 및 기능)</b>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평생교육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·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5조(구성 및 위원)</b>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<u>1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부구청장</u>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외한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시설의 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,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, 품위손상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여임기</u>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⑧ (생략)</p> <p>⑨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, 관계전문가, 기타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조(구성 및 위원)</b>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<u>12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구청장</u>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.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당연직 위원 : 서울특별시 서부 교육청 학무국장</li> <li>2. 위촉직 위원 : 평생교육 전문가,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, 평생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</li> </ol> <p>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남은 기간</u>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, 관계전문가,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7조(실무협의회)</b> <u>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·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7조(실무협의회)</b> <u>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·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
<b>제3장 평생학습센터</b>	<b>제3장 평생학습센터</b>
<p><b>제9조(설치)</b> ① 구청장은 구민의 <u>평생학습</u>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(이하 “평생학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9조(설치)</b> ① 구청장은 <u>법 제21조에 따라</u> 구민의 <u>평생교육</u>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(이하 “평생학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0조(기능)</b>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평생학습</u> 정책개발 및 연구</li> <li>2. <u>평생학습</u>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</li> <li>3. <u>평생학습</u>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</li> <li>4. <u>평생학습</u>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</li> <li>5.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<u>평생학습종사자의</u>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</li> <li>7. 기타 <u>평생학습</u>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	<p><b>제10조(기능)</b>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평생교육</u> 정책개발 및 연구</li> <li>2. <u>평생교육</u>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</li> <li>3. <u>평생교육</u>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</li> <li>4. <u>평생교육</u>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</li> <li>5.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<u>평생교육종사자의</u>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</li> <li>7. 그 밖에 <u>평생교육</u>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2조(운영비 등 지원)</b>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<u>평생학습단체</u>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2조(운영비 등 지원)</b>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<u>평생교육단체</u>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<b>제14조(수강료 징수 등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생략)</li> <li>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<u>평생학습</u>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</li> <li>③ (생략)</li> </ul>	<p><b>제14조(수강료 징수 등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<u>평생교육</u>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</li> <li>③ (현행과 같음)</li> </ul>